

## 이천시'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안)

### 1. 주요 법적근거

●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제1항 :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제2항 : 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제1항 :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
- 제2항 :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이하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
  - 제1호 : 1건당 예정가격 5억이상(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2억 5천만원이상)인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,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다.

- 제2호 :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만 제곱미터이상(구가 없는 시와 군의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이상)

●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

- 제1항 :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  - 제1호내지 5호는 생략
  - 제6호 :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

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

- 제1항 :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

본 '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19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바, 그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 중리동 173-6번지 대지에 중리동 제1통 경로당 및 행정보조 청사신축 1건에 수량 484.2㎡, 추정가액 3억 112만 5천원과 처분대상 재산은 구사회복지관 부지 1건 2필지에 수량 545.4㎡, 평가액 12억 1,997만 6천원, 구복지회관 건물 1건에 수량 564㎡, 평가액 8천 2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,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